

# 인천대학교 지역산업지능화 혁신연구센터 운영규정

제정 2023-12-29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부속기관규정 제7호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지역산업지능화 혁신연구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소재)** 센터는 인천대학교 내에 둔다.

**제3조(업무)** 센터는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반도체, 자동차 기반 지능화 혁신 모델 교육 체계 구축 및 운영
2. 차량용 전동화 시스템 고장 진단 지능화, 전력 장치 설계 및 제어의 지능화, 반도체 검사 장비의 이상 탐지 지능화 관련 재직자 인력 양성
3. 타 대학 및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
4. 사업의 성과관리 및 홍보
5. 기타 본 센터의 사업과 운영에 관한 사항

## 제2장 조직

**제4조(인력 및 조직)**

- ① 센터는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속기관으로 한다.
- ② 센터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장을 둔다.
- ③ 센터에 부센터장을 둘 수 있으며, 그에 관한 사항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.
- ④ 센터는 각 세부 주제별 참여교수를 둔다.
- ⑤ 센터에 사업전담직원을 두며, 직원채용과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센터장이 결정한다.

### 제5조(임명 및 임무)

- ① 센터장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센터장은 센터의 전체 사업 업무를 총괄한다.
- ③ 부센터장은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하며, 세부 주체별 참여교수는 센터장이 임명한다. 부센터장, 참여교수는 센터장의 임무를 보좌하고 실무를 총괄한다. 부센터장은 센터장 부재 시 그 업무를 대신한다.
- ④ 전담 직원은 본 센터의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.

## 제3장 운영위원회

### 제6조(위원회 설치 및 운영)

-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,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운영위원은 센터장이 추천하고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.
-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 1.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 2.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
  3.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
  4. 사업운영과 관련된 사항
  5. 그 밖에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

제7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### 제8조(회의 소집 및 회의)

-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

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회의록은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.

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## 제4장 재정 및 기타

제9조(재정) 센터는 다음의 재원으로 운영한다.

1. 국고지원금
2. 인천대학교 지원금
3. 민간지원금

제10조(회계기준 및 사업기간) 센터 사업비의 회계와 사업기간은 관련 법령이나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,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관련규정을 따른다.

제11조(사업비의 집행)

- ① 센터 사업비의 집행은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. 단, 정부지원 사업비의 경우 지원기관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른다.
- ② 센터장은 센터의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12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<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관련규정>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(2023-12-29 규정 제7호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이전에 수행한 사업 관련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